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104
----------	-------

발의연월일 : 2025. 9. 18.

발 의 자 : 이용선 · 최혁진 · 윤건영
송재봉 · 채현일 · 조정식
박해철 · 한민수 · 장종태
문정복 · 김문수 · 권향엽
박지원 · 김준형 · 이재정
김영배 의원(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남북 간의 지속적이고 다양한 민간교류협력은 주민 간 적대감을 완화하고 상호 신뢰를 형성함으로써 안정적인 남북관계 및 평화통일 여건을 조성하는 중요한 기반임. 그러나, 최근의 남북관계 경색과 장기화된 교류협력 중단으로 인해 남북교류협력 거버넌스가 유례없는 수준으로 훼손되어 있는 상황임.

특히 남북교류협력과 관련하여 정부와 민간을 연계하고, 민간단체 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정 기관이 부재하여, 남북교류·협력의 추진기반 자체가 약화되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남북교류·협력과 관련한 연구, 정책대안 개발, 종합적 민원업무, 민간단체 지원 활동을 수행하는 남북교류협력재단의 설립 근거 조항을 마련함으로써, 일관성 있는 민간교류 지원 거버넌스 구조를 구축

하고 남북교류협력 증진과 한반도의 평화로운 공존 및 공동 성장에
이바지하게 하고자 함(안 제24조의3 신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3(남북교류협력지원재단) ① 정부는 남북교류·협력의 증진과 지원을 위하여 남북교류협력지원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재단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재단은 필요한 경우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내외 및 북한지역에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한 연구, 조사 및 홍보
2. 남북교류·협력의 활성화 등을 위한 정책대안의 개발 및 대정부 건의
3. 남북교류·협력과 관련한 전문인력 교육·훈련 및 육성
4. 남북교류·협력에 수반되는 절차 안내·상담·알선 등 종합적 민원 업무
5. 남북교류·협력의 활성화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사업

6.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7. 제1호부터 6호까지의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영리법인·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④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1. 정부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수익사업의 이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⑤ 그 밖에 재단의 설립,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
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단법인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
행 전에 설립된 사단법인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는 이 법 시행과 더
불어 청산되며, 청산법인의 권리·의무는 제24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남북교류협력지원재단이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협회의 임직원은 재단의 임직원으로 선임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협회 정관에 따른 임기

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협회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것은 재단에 대하여 지정한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24조의3(남북교류협력지원재단)</u> <u>① 정부는 남북교류·협력의 증진과 지원을 위하여 남북교류협력지원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u> <u>② 재단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재단은 필요한 경우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내외 및 북한지역에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u> <u>③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u> <u>1.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한 연구, 조사 및 홍보</u> <u>2. 남북교류·협력의 활성화 등을 위한 정책대안의 개발 및 대정부 건의</u> <u>3. 남북교류·협력과 관련한 전문인력 교육·훈련 및 육성</u> <u>4. 남북교류·협력에 수반되는 절차 안내·상담·알선 등 중</u>

합적 민원 업무

5. 남북교류·협력의 활성화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위탁한 사업

6.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
하다고 인정한 사업

7. 제1호부터 6호까지의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④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재원
으로 운영한다.

1. 정부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수익사업의 이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⑤ 그 밖에 재단의 설립, 구성
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
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
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
을 준용한다.